의안 번호	87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이정희・감규상・강길순・김우진・김원일
남재욱・남호준・문순규・박영주・박찬열
서명일・심임숙・전태완・차중현
하경석 의원(15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임. - 이정희 의원 발의 -

Ⅰ 발의현황

1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42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조례안

○ 조 례 명 :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 상정시기 : 제156회 임시회 ('26. 10. 23. ~ 30.)

○ 발 의 자 : 이정희 의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복지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현황 >

ㅇ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ㅇ 설 립 일 : 2009. 10. 30.
ㅇ 소 재 지 :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경남사회복지센터 1층)
ㅇ 회 장 : 강기일(제7대 회장, 임기3년 '26. 7. 7. ~ '29. 7. 6.)
ㅇ 조직구성 : 임원 26명(회장 1, 부회장 6, 이사 17, 감사 2), 직원 1명
ㅇ 회 원 수 : 단체 64개 기관, 일반회원 20명
ㅇ 주요사업 : 사회복지 현안 조사·연구, 지역사회봉사단 구축, 복지소외계층 발굴·연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복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3 주요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제 1 조 (목 적)	• 지원 조례의 목적에 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시장의 책무)	•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2조)
제 3 조 (지 원 사 업)	• 법정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증진 사업 지원
제 4 조 (예 산 지 원)	• 협의회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 5 조 (지 도 · 감 독)	• 협의회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지도·감독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4조)

Ⅱ 검토내용

1 관련법령 저촉 여부 : 해당없음

2 소요예산 : 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부담 가능성 有

○ 운영비·사업비 지원 시, **시비 연 74,800천원 증가 예상**

【 소요예산 추계 】 (단위 : 천원)

구분	현행	조례 제정 후	증감	산출기초
합계	**60,200**	**135,000**	**74,800**	
기존 지원 (사업비)	55,000	55,000	-	- **사회복지정보센터 활성화**(도비20·시비80) : 인건비 1명 + 사업비
	5,200	-	**△5,200**	- **들썩들썩 토크**(시비100) : 유공자 시상·특강 등
신규 지원 (운영비+사업비)	-	55,000	**55,000**	- **운영비**(시비100) : 인건비* 1명 + 사무관리비·공공요금 등
	-	25,000	**25,000**	- **사업비**(시비100) : 사회복지 정책포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 기존「들썩들썩 토크」사업(시비 5,200천원)은 종료, 신규 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

* 인건비 : '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과장급 7호봉(월 3,061.5천원) 기준 산정

3 유사 조례 제정 여부 : 해당없음

4 타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 계	특례시	경남	기타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지 자 체 수**	**101**	**4**	**3**	**94**
예 산 지 원 (시 비)	**지 자 체 수**	**122**	**4**	**6**	**112**
	운 영 비	10	-	-	10
	사 업 비	44	-	5	39
	운영비·사업비	68	4	1	63

Ⅲ 검토결과

○ **(법적 타당성)**「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없음**

- **법무담당관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삭제 의견**

※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기 규정

○ **(재정부담)**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 있으나, **타 지자체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내 지원 가능**

○ **(기대효과) 협의회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 및 **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종합검토 결과, **지역사회 복지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타당**

붙임 1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안)

창원시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붙임 3 '25년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실적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VMS 인증관리센터 관리·모니터링	인증관리센터 490개소, 봉사자 230,944명 관리 / 현장 모니터링 5개 기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디지털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	3회 / 60명
	지역자원봉사단 연계지원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및 활동 지원	9개 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AI 활용 글쓰기·리더십·전자책 제작 교육	4회 / 91명
	직무 역량강화 교육	재무회계 실무 및 노동관계법 교육	2회 / 56명
복지현장 교류	창원복지 들썩들썩! Talk 사업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 및 영화관람 등	120명
복지소외계층 지원	좋은이웃들 사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맞춤형 지원·민간자원 연계	위기구호 60세대, 아동 안전꾸러미 33세대
	민간자원 연계사업	장학금·김장나눔··환경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 / 장학금 17명, 장애인 야영대회 220명 참여 등

붙임 4 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현황

1 조례현황

구 분	전체 지자체 수	조례 제정 지자체 수	제정 비율
기초지자체	**226**	**101**	**44.7%**

2 예산현황 (보조금 기준)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지자체 수	비율	평균 지원액
합 계	**122**	**100**	
운 영 비	10	8.2	80.2
사 업 비	44	36.1	67.7
운 영 비 · 사 업 비	68	55.7	235.9

※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23개(54.4%) 예산지원(창원시 포함)

【 참고 : 특례시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지자체명	예산 합계	운영비	사업비	직원 수
창 원 시	60.2	-	60.2	1
고 양 시	259.5	209.5	50.0	4
화 성 시	234.3	99.5	134.8	4
용 인 시	193.2	143.2	50.0	3
수 원 시	192.0	183.0	9.0	3

3 주요사업

(단위 : 개 / 백만원)

사업명	지자체 수	평균 예산액 (보조금 기준)	대표 지자체	주요 내용
사회복지의 날 행사	62	14.7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진주시 등	기념식, 유공자 표창, 복지대회 등
종사자 교육·역량강화	24	18.4	화성시, 시흥시, 도봉구, 서대문구 등	직무교육, 워크숍, 연수 등
좋 은 이 웃 들 사 업	14	5.8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아산시 등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자원연계
푸드뱅크·푸드마켓	21	54.7	안성시, 강릉시, 청주시, 진주시 등	기부식품 모집·배분, 취약계층 지원

붙 임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법령 및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 제4조(예산지원)

나. 비용발생요인

○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인건비 및 필수 운영경비**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토론회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회 운영·사업비는 **연 80,000천원으로 추계**

- **운영비 55,000천원, 사업비 25,000천원**

※ 기존 협의회 사업비 5,200천원은 신규 사업으로 확대·개편, **추가 재정부담은 연 74,800천원**

구분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고
총 계 (a+b)			**80,000**	
① 운영비 (a)			**55,000**	**신규**
인건비 (상근 직원 1명)	소 계		47,612	
	기 본 급	3,061,500원 × 12개월	36,738	'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과장급 7호봉 기준
	명 절 휴 가 비	3,061,500원 × 60% × 2회	3,674	
	퇴 직 적 립 금	280,640원 × 12개월	3,368	
	사회보험 부담금	319,300원 × 12개월	3,832	
운영경비	소 계		7,388	
	임 차 료	사무실 : 137,500원 × 12개월 복사기 : 165,000원 × 12개월	3,63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상·하수도료, 가스료, 인터넷 요금 등	2,350	
	수용비 및 수수료기타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1,408	
② 사업비 (b)	사회복지의 날 기념 지역복지 역량강화 행사	역량강화 특강, 유공자 표창, 행사장 임차, 홍보·행사 운영 등	**15,000**	**기존사업 확대·개편**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복지현안 조사·연구비, 정책토론 자료 제작, 행사장 임차·홍보 등	**10,000**	**신규**

【 참고 : 타 특례시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 명)

지자체명	예산 합계	운영비	사업비	직원 수
고 양 시	259,500	209,500	50,000	4
화 성 시	234,300	99,500	134,800	4
용 인 시	193,200	143,200	50,000	3
수 원 시	192,000	183,000	9,000	3

나. 추계 결과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합 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운영비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5,000
사업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김남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 출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협의회 운영·사업 지원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재원조달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시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